

(비공식 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 Sor.1/2560 호

기술·혁신 개발의 촉진

기술 및 혁신 역량을 개발하고 국가 및 산업의 일반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불기 2520 년(1977 년) 투자촉진법 제 16 조 두번째 단락, 제 18 조, 제 31 조 및 제 31/1 조에 의거하여 투자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을 고시하는 바이다.

1. 불기 2557 년(2014 년) 12 월 3 일 투자위원회 고시 제 2/2557 호에 첨부된 일반적인 투자촉진 활동 목록에 'Section 8 기술 및 혁신 개발'에 해당하는 항목을 추가한다. 활동, 조건 및 인센티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Section 8 기술 · 혁신 개발

활동	조건	인센티브
8.1 핵심 기술 개발 대상 8.1.1 바이오기술 개발 8.1.2 나노 기술개발 8.1.3 첨단 소재기술 개발 8.1.4 디지털 기술 개발	1.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목표 산업에서 제조 공정 또는 서비스 제공의 기본으로 사용될 목표기술개발 공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교육기관 또는 연구소와 협업하는 형태로 기술 전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예) Technology Research Consortium 3. 프로젝트가 투자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동의를 얻은 과학기술파크에 위치한 경우,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 종료 후 5 년간 추가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10 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상한액 없음)

2. 2014 년 12 월 3 일 투자위원회 고시 제 2/2557 호에 첨부된 촉진 활동 목록에서 표적 기술 개발(Enabling service)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유치 대상 활동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 5.6 일렉트로닉스 설계
- 7.11 연구·개발
- 7.13 엔지니어링 설계
- 7.14 과학 실험실
- 7.15 보정(Calibration) 서비스
- 7.19 직업훈련센터 (과학 및 기술 분야에 한함).

3. 2 번 항목으로 촉진활동이 지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술기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3.1 조건

- (1) 프로젝트는 다음 목표 기술 중 한 가지에 대해 개발 지원을 해야 한다. 표적 기술에는 바이오 기술, 나노기술, 첨단 소재 기술 또는 디지털 기술 등이 해당한다.
- (2) 투자위원회에서 지정한 형식에 따라 교육기관 또는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기술 이전이 일어나야 한다. 예) Technology research consortium.

3.2 인센티브

- (1) 법인 소득세 면제를 10 년 간 받을 수 있다. (면제 상한액 조건 없음)
- (2) 기타 혜택은 2014 년 12 월 3 일 투자위원회 고시 제 2/2557 호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4. 투자촉진 카테고리 8.1 핵심 기술 개발 목표 대상(Enabling service)이나 2 번 항목에 따른 표적 활동들은 2014 년 12 월 3 일 투자위원회 고시 제 2/2557 호에 따라 가치기반 혜택(merit-based incentive)을 신청할 수 있고, 13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법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본 고시는 2017 년 2 월 8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일 2017 년 3 월 14 일
(General Prayut Chan-o-cha)

투자위원회 의장